Yeosu
Web Contents

2024년 05월 08일 14시 20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제설 제빙 도구 비치 3

제설 제빙 도구 비치

2014.04.17 조회수 56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41
담당부서	도로과
상위법령	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
조례	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6-03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6-03-13
규제내용	제8조(제설·제빙작업의 도구 비치·관리) 건축물관리자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·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33

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43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